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2014.4.8(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 | 좌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설명 |

보건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론 |

이영애 노들장애인아간학교 학생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문의 : 김용익 의원실 (내선 2108)

**주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	축사	<p>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p> <p>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p> <p>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p> <p>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p> <p>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p>
<p>※ 좌 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p>		
10:30	개정안 설명	<p>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li> </ul> <p>새정치민주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성대 복지전문위원</li> </ul> <p>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li> </ul>
11:15	토론	<p>이영애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학생</p> <p>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p> <p>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p>
11:45	종합 토론	<p>참석자 전원</p>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설명

보건복지부	13
-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새정치민주연합	35
-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49
-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이영애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학생	79
------------------	----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85
-------------------------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	93
--------------------------	----

## <축 사>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김 한 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도미노는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망연자실했지만, 대통령은 그 책임을 나라의 정책을 국민이 알고 있지 못하다며 ‘국민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빈곤층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은커녕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제1과제로 내세워 이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복지확대보다는 부정수급을 잡으려다 추가삼간을 태운 꼴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위기가정을 찾는 일제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를 통한 지원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이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중심주의 정치’와 ‘삶의 정치’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지자체의 재량권 부여를 통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이 그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릴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법 개정 국민공청회’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청회가 개최되기까지 애쓰신 김용익 의원님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 철 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가지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창당 후 첫 번째 일정이 바로 복지사각지대 최전선에 계시는 복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도 아프다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근 잇따른 불행한 사건들은 우리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5년간 기초생활 수급자가 20만명이나 줄고, 위기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일년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더 넓어진겁니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은 수 많은 저소득국민들을 빈곤의 절벽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송파 세모녀의 비극을 아프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가지 법안 발의는 작은 시작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선은 “빈곤 족쇄” 라고 불리는 부양의무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 제도의 개선은 지원기준의 완화를 통해 수혜대상을 늘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공조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신속히 찾아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각지대를 밝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국민공청회가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새정치연합의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과 국민기초생활 지키기 연석회의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중심주의 정당입니다. 그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존재이유와 목표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삶의 문제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있게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 <축 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 병 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병현입니다.

최근 개인 신병 비관이나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현행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재인식 하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논의가 재개되어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입법처리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복지 사각지대는 복지 수급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고가 누적되거나 돌발 상황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경우에 생깁니다.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은 큰 어려움이 닥쳐도 정부나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를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설사 복지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기준이 까다로워 도움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복지, 적극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1호 민생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속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개선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 민간의 존엄을 지키는 정치로 고단한 국민의 삶을 보듬어주는 새로운 정치의 실천을 약속드립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이번 국민공청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 제 세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법 개정 국민공청회’ 개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국민공청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과 예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과 1개 공적부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다층적 지원체계를 갖추었지만, 모든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민들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약 129만 가구 약 310만명의 건강보험체납자와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원천적으로 의료보장 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노인 600만명 중 400만명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약 50%가 빈곤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노인수급자는 37만명 뿐입니다.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 중 약 260만명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 근로자의 약 50%만이, 한시적 근로자의 약 25%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독일은 총인구의 92%가 가입되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 신청자 인정비율이 5.8%(약 33만명)로 OECD 평균 12.1%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중첩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듯이 사각지대에 빠진 국민들 대부분은 모든 제도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과 취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은 산재·고용보험을 바랄 수도 없으며, 특히 어려운 국민들이 마지막 보루로 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너무 많고’, ‘부양의무자가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요건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에 다니는 국민들은 정부의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준 높은 복지까지 더해져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사각지대로 인하여 복지제도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분배를 이루어내기는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악화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가 복지에 역행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오늘 국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반을 돌아보고 그에 대한 처방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성과를 낼 때, 우리나라가 비로소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책적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법 개정 국민공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설명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임호근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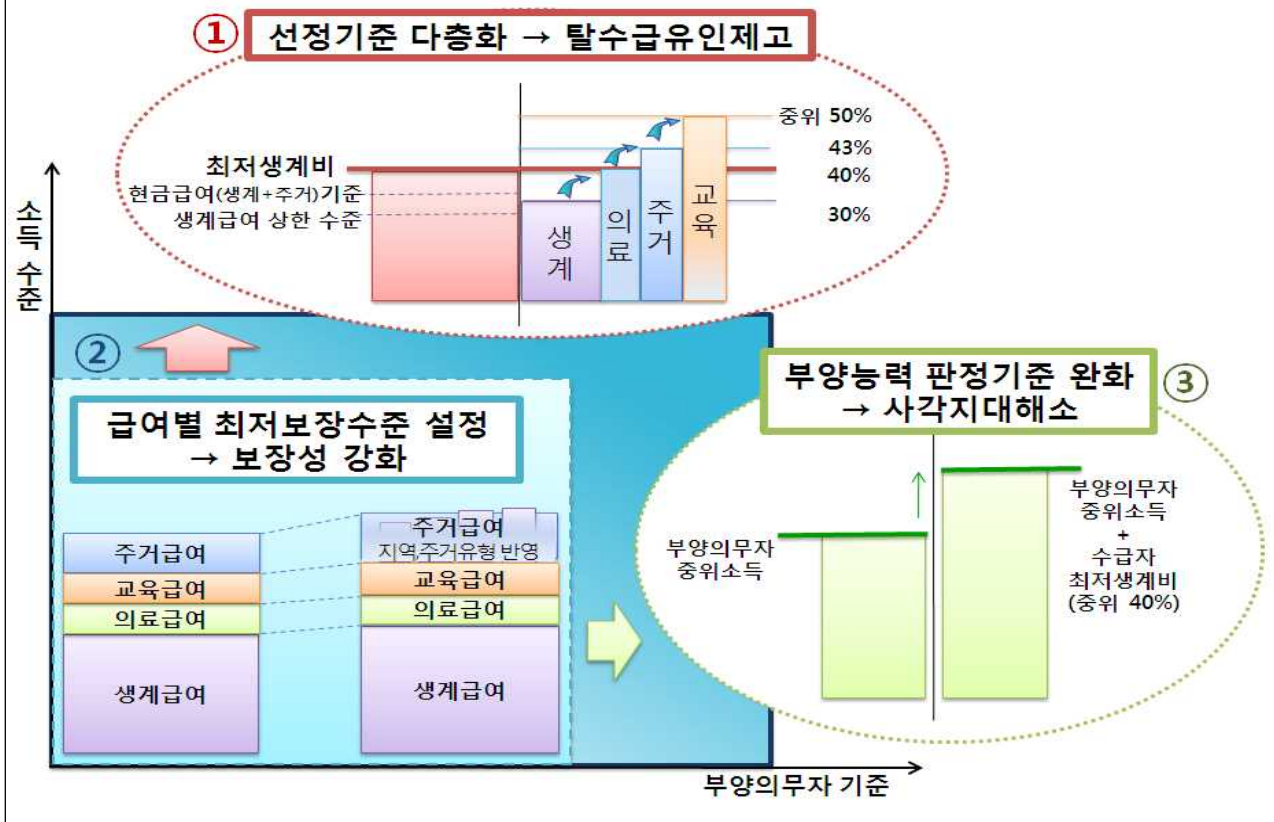
---



# I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개요

## [ 개편 방향 ]

- ① All or Nothing의 선정기준을 다층화, 탈수급 유인 제고
- ② 급여별 특성 ·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한 보장수준 현실화
- ③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 선정기준 다층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 맞춤형 보호 확대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

□ 급여수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

현 행		→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 계 주 거  의 료  교 육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14.10월 개편 당시에는 개편 전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되,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17년까지 중위 30% 수준으로 조정 검토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현실화

\* '14년 기준(4인가구), 290만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413만원) → 464만원

□ 추진체계 구축

- (중생보 기능 강화) 정책대상 및 급여별 담당부처 확대(주거·교육급여)에 따라 중생보의 빈곤정책 평가·방향설정 및 조정기능 강화
- (전달체계 개선) 지자체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필요인력 충원(1,177명), 전달체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연계
- (주기적 평가기반 구축) 빈곤층의 복지욕구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예산 : 수급자 급여 총액 ('13) 69,610억원 → ('14) 71,814억원(2,204↑)

\* 4/4분기 예산을 연간 편성 시 7,388억원( '13년 대비 11% 증)

□ 시행시기 : 법률이 개정되면 2014. 10. 1부터 시행

## □ 기대효과

### ○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보장 수급자는 83만 가구에서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약 30% 증가
- 중위소득 50% 이하 정책개입 대상자(430만명) 중 보장율(급여대상자 비율)이 32%(140만명) → 40% 수준(약 180만명 수준)으로 증가

#### < 개편 전/후 수급자 수 비교 >

	현행 통합급여	개 편('15년 개편완료)
생계급여	128만명	133만명
주거급여	115만명	157만명
교육급여	23만명	42만명
의료급여	139만명	145만명
계	139만명	176만명

### ○ 급여별 보장수준 현실화

- 맞춤형급여 개편시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 14년 개편 전후 비교 시 1.4만원(3.3%) 상승 예상

#### < 개편 전/후 평균 현금급여액 비교(' 14년 기준) >

(단위 : 만원)

	현행 통합급여	개 편(생계: 개편전수준)		개 편(생계: 중위 30%)	
		평균급여액	급여 상승액	평균급여액	급여 상승액
생계급여	32.9	32.9	-	37.7	4.8
주거급여	9.5	10.9	1.4	10.9	1.4
계	42.4	43.8	1.4	48.6	6.2

### ○ 탈수급 및 탈빈곤 촉진 효과

- 근로능력자( '12년, 24만명)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안정적 탈수급 및 자립 기반 마련

### ○ 관련 사업 연계·조정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지원 기반 마련

- 주거복지정책\*과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연계 등 관련 사업간 통합적 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간 연계 효과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융자,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확대·개편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빈곤정책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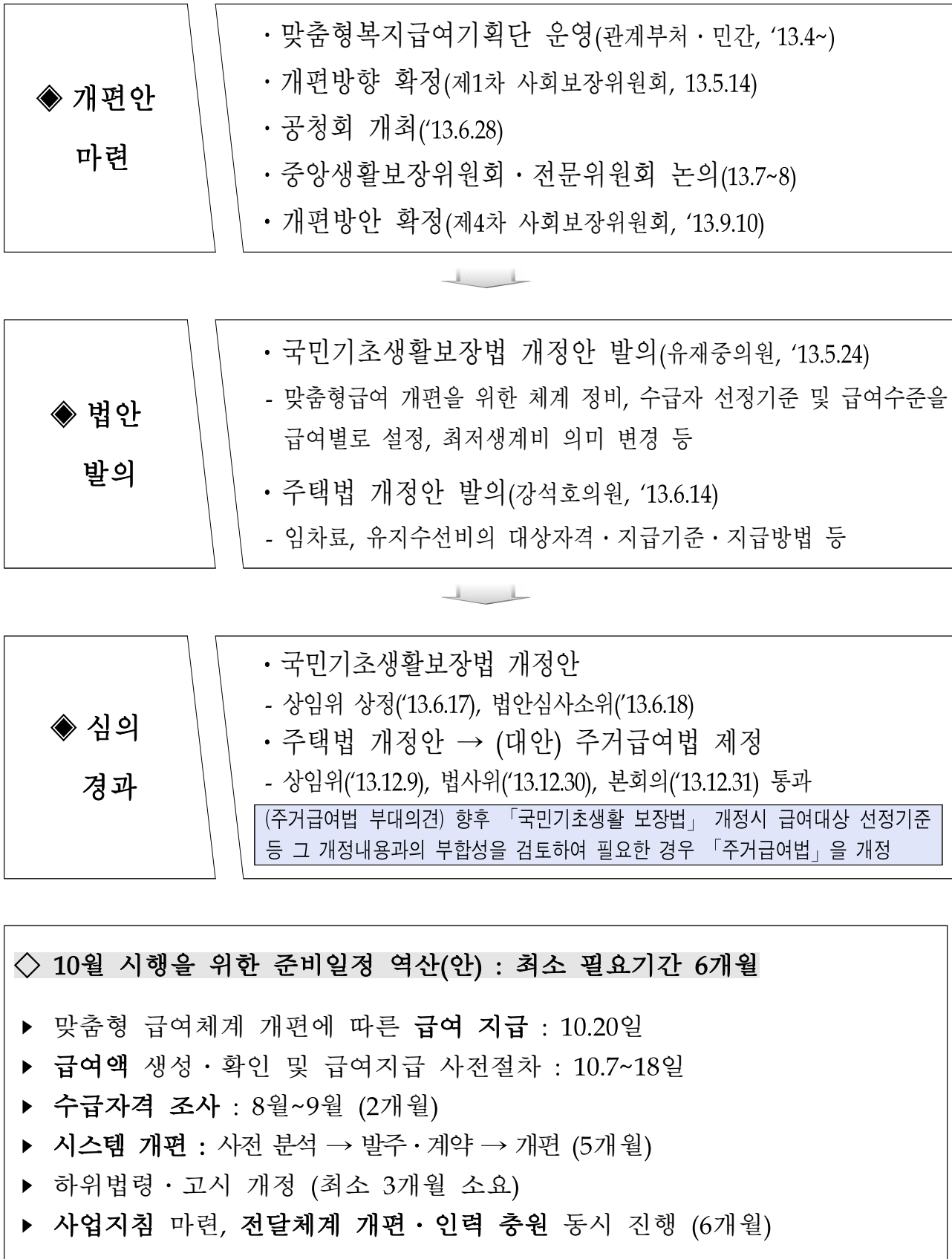
# 참고 1

##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선정기준 및 급여 비교

( ' 14년, 4인가구)

급여	선정기준			지원급여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생계비 이하 163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재산액 제외</li> <li>· 재산의 소득 환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중위수준) : <math>(A+B) \times 185\%</math></li> <li>· 재산 : 중위소득 재산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대 급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 자활)</li> <li>· 현금급여(보충급여): 생계(103만원), 주거(29만원)</li> <li>· 현물급여(정액&amp;서비스): 교육, 의료, 자활</li> </ul>
맞춤형 급여 (안)	생계 급여	중위소득 30% 121만원	현행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편전 급여수준 (103만원) ~ 중위소득 30%(121만원)</li> <li>· 보충급여</li> </ul>
	의료 급여	중위소득 40% 16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 (의료현물지원)</li> </ul>
	주거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수준이 높은 주거빈곤 계층</li> <li>· 중위소득 43% 174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가구 : 기준(실질) 임대료 지급</li> <li>· 자가가구 :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 집수리 등 현물지원 강화</li> </ul>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20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li> </ul>

## II. 그간의 추진 경과



### Ⅲ. 법안 주요내용 및 대안 검토

#### < 유재중의원안 주요 개정사항 >

-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변경함 (안 제2조제6호, 제6조 등)
-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신설)
- 급여의 종류별로 소관행정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결정·공표 및 급여의 기준 결정주체에 반영 (안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2항)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삭제(제6조제3항 삭제)
-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 수급권자 선정요건을 급여별로 설정하며, 주거·교육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 (안 제5조 삭제, 안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함 (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2항 단서)
- 이의신청 및 그 결정, 통지 관련사항에 급여의 종류별 소관행정기관 확대 반영 (안 제40조, 제41조)
- 법 시행 당시 수급자가 이 법 시행으로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이 변경된 경우,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한시적 지원 등을 실시 (부칙 제3조)

**1**

**수급권자 선정기준 (안 제5조 삭제, 안 제8조 등)**

현 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개정안의 내용

-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총괄규정(최저생계비 이하)은 삭제하고,
  -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급여별로 수급권자 범위를 정함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등)
-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으로 함
  - \* 현행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계측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 고시
  - 개정 선정기준 : 중위소득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 고시

□ 주요 쟁점

-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법정화되지 아니하고 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동될 우려 및 보충급여 폐기 지적(참여연대 등)

- 한편,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은 경기 급변 시 조정이 곤란하여 경직성 우려

□ 수정 검토

- ‘기존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하여 상대적 빈곤 관점 반영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예측가능성과 경직성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기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를 법률에 명시 검토
  -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므로 법률에 명시
  - \* (상임위 검토의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기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 제시

개정안	수정 검토대안(예)
제2조(정의) <신 설>	제2조(정의) 12. “기존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중위소득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기존 중위소득 산정 및 절차」 조항 신설(대통령령)>

제3조의3(기존 중위소득의 산정 및 절차) ① 법 제2조제12호의 기존 중위소득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기존 중위소득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1. 기초자료 :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2. 가구소득의 범위 :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3. 가구소득 증가율 : 5년간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4. 가구규모 균등화 :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중위소득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도 <대안> 방식으로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 으로 규정 → <대안> 방식으로 개정(주거급여법)

- 지금까지 전물량 방식으로 계측되어온 최저생계비는 계측방식의 문제 및 상대적 빈곤 반영 필요성 지속 제기
  - (계측방식) 표준가구 설정, 마켓바스켓 구성 항목, 단가에 대한 논쟁 및 자료 선택·해석 방식·분석의 자의성 등에 대한 한계 지적
  - (빈곤의 상대성)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배고픔의 극복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변화
- 상대빈곤 관점 반영은 일반국민의 생활수준 반영, 최저생계비 측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 최소화, 계측의 간편성에 의미
  - \*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이 급여수준에 반영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30%)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 최저생계비 증가에 비해 중위소득의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연도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상승률 비교시( '06~' 12년, 4.9%) 최저생계비 상승률(4.2%)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중위소득이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밖에 없으므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절대적 빈곤 관점과 상대적 빈곤 관점의 장·단점 >

	절대적 빈곤 관점 (전물량 계측)	상대적 빈곤 관점
장점	① 전반적인 국민 소비행태 변화 일부 반영 ② 지출관점의 절대보장 수준 설정에 적합 ③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① 국민의 소득·지출수준을 고려한 최저보장 수준 설정 가능 ② 행정비용·소모적 논쟁 최소화 ③ 소득관점의 상대빈곤 수준 설정에 적합
단점	① 상대적 박탈감 등 변화하는 사회상황 반영 한계 ② 계측에 전문가의 자의성 개입 여지 ③ 불필요한 논의 반복 → 행정적·물리적 낭비	① 재정지출이 비교적 클 수 있다는 지적 ② 경기변동 및 소득분배 구조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음

**2**

**급여별 보장수준 (안 제2조제6호, 안 6조 등)**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6. " <u>최저생계비</u> "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 <u>최저생계비</u> "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u>공표하는 금액 등을</u> 말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u>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u>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개정안의 내용

- 통합급여 체계의 최저생계비는 급여의 종류별 최저생계비로 수정하고, 급여별 최저생계비 결정주체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 주요 쟁점

- 통합급여 체계의 최저생계비를 급여별 최저생계비로 규정, 최저생계비 개념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고, 전체 급여 수준을 제시하기 곤란

□ 수정 검토

- 맞춤형급여에서는 급여별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설정되므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할 보장수준 개념 정립 필요

-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최저생계비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경하고, 전체 급여수준을 중생보, 종합계획 수립 등 운영을 통해 확보

\* 최저보장수준 결정 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빈곤실태조사 실시, 기존 수급자 이행기 보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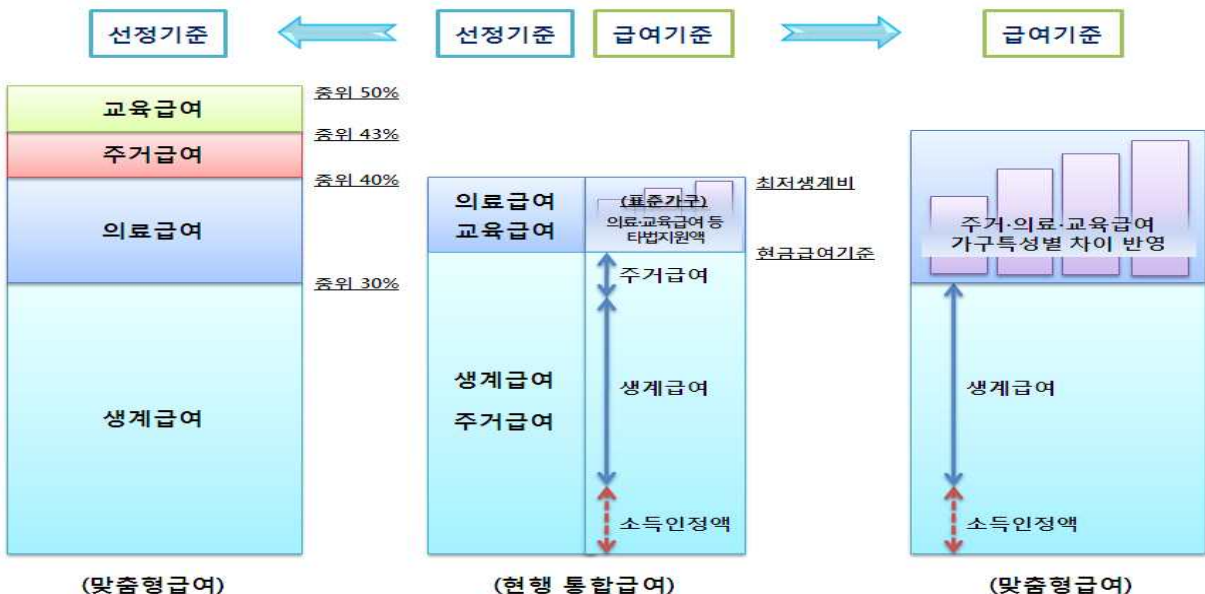
개정안	수정 검토대안(예)
제2조(정의)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공표하는 금액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u>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급여의 금액이나 보장수준</u> 을 말한다.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u>최저생계비</u>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u>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u>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u>최저생계비</u>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u>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u> 을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 최저생계비의 개념 변화**

○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기준'이면서 '급여 수준'이지만, 개정안의 최저생계비는 급여별 '급여 수준'을 의미

\*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선기준(중위소득), 보장수준은 최저생계비(최저보장수준)

**<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선정·급여기준 변화 >**



현 행	개정안
<p>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li> <li>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li> <li>3. 급여기준의 결정</li> <li>4. 최저생계비의 결정</li> </ol> <p>&lt;신 설&gt; &lt;신 설&gt; &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li> <li>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li> <li>2. <u>소득과 재산의 수준 등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의 결정</u></li> <li>3. <u>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u></li> <li>4. <u>최저보장수준의 결정</u></li> <li>5. 제6조의2에 따른 빈곤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6. 제20조의2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7. <u>급여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u></li> <li>8. (현행 제5호와 같음)</li> <li>9. (현행 제6호와 같음)</li> </ol>
<p>&lt;신 설&gt;</p>	<p>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u>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li> <li>② <u>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급여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u></li> <li>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li> <li>④ <u>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u></li> </ol>

□ 개정안의 내용

- (조정기능 강화) 개정안에 반영된 빈곤실태조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급여기준의 결정, 차상위 사업 조정 등 총괄·조정기능 강화
- (위원회 정수 확대) 소관부처 확대에 따른 정부위원 및 전문가 추가 위촉을 위해 정수 확대(13명 → 16명)

□ 주요 쟁점

- 유사 위원회의 중복적인 심의를 피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생략 가능
  - 제20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 우려

□ 수정 검토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권한 축소 우려가 있는 단서조항 삭제 검토
- 종합계획·평가와 보완적 관계인 빈곤실태조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치 변경

개정안	수정 검토대안(예)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서 삭제)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급여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의 규모,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6조의2의 위치 변경)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4**

**기존 수급자의 급여수준 보장 (부칙 제3조제2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중전의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 수급자가 이 법 시행으로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이 변경된 경우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한시적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

- 수급자가 맞춤형급여 도입으로 급여의 수준 등이 변경된 경우 최저 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 지원 실시
  - 수급자의 소득·재산의 변화 없이 제도개편 만으로 수급 탈락, 급여가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기존의 급여수준 보호

주요 쟁점

- “한시적 지원 등” 지원기간·내용이 모호해 수급자 보호에 한계 지적

수정 검토

- 이행기 한시 지원 대상·지원수준 등을 구체화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 \* “개편전 가구별 현금급여 총액 - 개편 후 총액” 이 0원이 될 때까지 지원

**수정 검토대안(예)**

제3조(중전의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중전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중전 규정 제8조에 의한 생계급여와 제11조에 의한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 대상가구 : 29만 가구, ‘14년 예산 : 402억원(연간 환산 시 1,608억원)

개정안	수정 검토대안(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u>다만</u> , 제20조의 개정규정은 <u>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u>다만</u> ,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u>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
제3조(중전의 수급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수급자는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로 본다.</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3조(중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u>중전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u> ③ 이 법 시행 당시 <u>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u> ④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u>주거급여의 지급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전의 제11조 규정에 의한다.</u>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4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④ 이 법 시행 당시 <u>중전의 제2조제6호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 차상위계층, 제5조 수급권자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u> ⑤ 이 법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제6조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u>2014년 9월 30일까지 2014년도, 2015년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포할 수 있다.</u>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제3조의2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 개정안 부칙 중 일부 수정·보완 검토

□ 시행시기 (부칙 제1조)

- '14.10월부터 시행, 다만, 교육급여는 학기제 등 학교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15.3월 시행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은 법안통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1개월로 조정

□ 종전의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추가(부칙 제3조)

- 기존 교육비지원사업 대상자 편의 도모 및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조사만을 거쳐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 필요(제3항 신설)
-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15.1월부터 시행(주거급여법 부칙 제1조)되므로 이 법 시행일부터 '14.12.31일까지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 필요(제4항 신설)

□ 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추가(부칙 제4조)

- 이 법 시행일('14.10월) 및 연도 중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예산확보, 법령 개정 등)을 감안, '14년 말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필요(제4항 신설)
- 시행일('14.10.1)이 다음 년도 최저보장수준 공표일('14.9.1)보다 늦어 '14년도 최저보장수준 공표일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제5항 신설)

□ 다른 법률의 개정 추가(부칙 제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제5조는 삭제되므로, 이를 인용한 의료급여법 제3조도 이에 맞게 수정 필요(제1항 수정)

## □ 법안의 주요내용

-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 (안 제5조)
  - \*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65만원) 이하
- (지급방법)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
  - 수급자에 지급\*하되, 공공임대 거주자는 임대인에 지급 (안 제7·제8조)
    - \*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인이 계좌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급 기피 우려
- (지급기준) 기준임대료·임대차계약,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주택조사) 신청·확인조사는 지자체가 수행, 신규업무인 주택조사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안 제10조~13조)
- (급여중지) 신청·확인조사 거부시 신청 각하, 지급 중지 (안 제14조)
  - 또한 급여의 목적외 사용으로 일정기간 임차료 연체시 지급 중지
- (시범사업) 임차료 지급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안 제16조)
  - \* 기존 임차수급 3만 가구를 대상으로 '14.7~9월(3개월)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정보시스템)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 규정 (안 제17조)
- (시행일) 임차료 보조는 ' 14.10.1일, 유지수선비 보조는 ' 15.1.1일부터, 시범사업은 ' 14.7.1일부터 시행 (부칙 안 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정합성 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기초법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부칙)
-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 급여대상 선정기준 등 그 개정 내용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주거급여법」 개정(부대의견)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기존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	맞춤형 주거급여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14년 개편전 70만 가구	94만 가구 (24만 가구 증) * '15년 신규 자가가구 추가시 97만가구
지원 기준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22.032%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77.968%)+주거급여액(22.032%)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유지수선비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급여액 전액 현금 지급	좌 동
자가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지원	주택개량 강화
소요 예산	'14년 6,592억원 (개편전 예산을 연간 펼칠시)	약 1조원 (개편후 예산을 연간 펼칠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13년 8만원 → '14년 개편전 9.5만원	약 11만원
전달 체계	지자체	좌 동 (주택조사는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설명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회

홍성대

---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방향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홍성대

## 1.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분포

- ‘송파 세모녀 사건’ 등 최근 취약계층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통상 복지사각지대는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충족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함
  - 복지욕구 충족에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 충실할 경우, 복지제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공받는 급여의 양이 욕구충족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음
  - 다양한 욕구 및 환경을 반영한 개별화(individualized)된 급여 제공이 새로운 복지관련 정치동학으로 대두되고 있는 맥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제공되는 급여가 개인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사각지대(질적?)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사각지대는 다양한 층위에 걸쳐 다양한 집단으로 존재함. 즉, 복지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사각지대 역시 다양한 층위에 분포하게 됨.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크게 ①공공부조, ②사회보험, ③사회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는 크게 이들 제도와 연관하여 3층위에 걸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① 공공부조관련 사각지대 :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인데, 현재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위 ‘비수급빈곤층’ 이 약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들은 대부분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② 사회보험관련 사각지대 : 사회보험관련 사각지대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음. 사회보험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서, 2010년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의 28.3%(480여 만 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3.9%(570여 만 명)으로 나타남. 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질적 보장 수준이 낮은 경우(광의의 사각지대)까지 포함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됨
- ③ 사회서비스관련 사각지대 :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저발달된 제도여서 사각지대 문제가 주목받지 못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 지원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고루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중산서민층이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제공되는 급여가 개인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분야임

## 2. 복지사각지대의 유형과 해소 방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복지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제도의 불충분한 수급권과 제도 접근의 장애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음. 즉, 제도의 수급권 범위(coverage)가 협소하거나 급여수준(level of benefits)이 낮아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이유로 실제 급여 수급을 받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전자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후자를 ‘전달체계관련 사각지대’로 지칭할 수 있음
  - 복지제도를 권리로서 인식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상당부분은 전자와 밀접히 연관됨
- 오늘 논의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사각지대 역시 불충분한 수급권 및 제도 접근의 장애 등 두 가지 원인에서 기인함

### 1) 제도적 사각지대

- 주지하다시피, 빈곤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 부양의무자 기준관련 사각지대 :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양능력을 갖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기초생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117만명에 달함
  - 부양의무자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에서부터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됨

- 소득재산 기준관련 사각지대 :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서 기초생보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수준이 기초생보 대상자와 다른없는 계층, 즉 소위 말하는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계층이 이에 해당함
  - 이 사각지대는 근원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상향하여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소 가능함. 다른 한편으로, 기초생보급여 제공체계 변화(‘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를 통해서도 일정한 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2) 전달체계 관련 사각지대

-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급권 부여는 ‘신청주의’를 따름. 따라서 기본적으로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방법을 모르거나(못하거나) 등의 이유로 수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상의 대국민 접점(access point), 즉 지자체의 발굴 기능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의 복지행정은 소득재산 조사 중심의 단순 행정업무 중심으로 발굴 업무가 대단히 빈약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역사회 모니터링,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이러한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발굴·지원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무 강화와 지역사회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한편, 우리나라 복지수급권 여부는 소득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단편적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복지현장의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즉, 수급권 부여에 적극성을 보일 경우 오히려 감사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

에, 소위 ‘딱한’ 사례를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도 수급권을 부여하는 적극성을 띠기가 곤란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을 판정하는 현장 담당공무원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함.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일반 조세로 운영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제도는 담당공무원 재량권 부여의 용이성 및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3.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계의 관심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으며 사각지대의 지형 및 해소 방안도 널리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이해에 입각하여 정치권 및 행정부처도 오래전부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옴.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옴
- 제도적 사각지대 및 전달체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방안을 입법에 두루 반영
-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시급성이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관련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둬.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관련 주요 입법 활동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입법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이낙연의원안(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li> <li>○ 수급권자 선정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li> </ul>
오제세의원안(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를 수급권자에 포함</li> </ul>
남윤인순의원안(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li> <li>○ 수급권자 선정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li> <li>○ 최저생계비를 전년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함</li> <li>○ 급여 신청 시 보장기관의 금지 행위 신설 등</li> </ul>
강동원의원안(1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li> </ul>
김용익의원안(2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장애인과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li> </ul>
최동익의원안(6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이상 공제하도록 상향 조정</li> </ul>
이목희의원안(9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노령연금법상의 연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제외</li> </ul>
안철수의원안(9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li> <li>○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li> </ul>
김용익의원안(9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의무자에서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li> <li>○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li> <li>○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부양능력 평가 기준 및 부양책임을 완화</li> <li>○ 65세 이상 노인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li> </ul>
이언주의원안 (발의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장에게 기초생보 대상자 선정 권한 부여</li> </ul>
최동익의원대표발의사 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제정안 (9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수립 및 정기적 평가 의무화</li> <li>○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사회 내의 주요기관의 상시적인 사각지대 발굴 공조체계 구축</li> <li>○ 단전·단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 발굴</li> <li>○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 신고 의무화 및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li> </ul>
김한길의원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9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긴급지원 인정) 부여</li> <li>○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로 규정</li> </ul>

## 1)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 입법

### (1)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

- 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음. 이는 부양의무자 관련 사각지대 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논쟁의 여지가 큰 사안이기 때문임. 특히,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가장 큰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의 내용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서부터 ‘범위 축소’, ‘특정집단(탈시설 중증장애인)에 국한하여 범위 축소’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임
-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의 정서나 타법과의 관계 등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함. 우리당도 법안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임
  -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부양의무에 대한 통념과 괴리된다거나 가족관계법과 상충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
  - 기초생보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는 처음부터 사회 통념과 괴리가 있었고 지금도 있음. 만약 사회적 통념, 그것도 전통적 통념을 기준으로 한다면,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특히 사위)는 물론, 시집간 딸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치 않음<sup>1)</sup>. 또한 여러 가족관계법에서 ‘가족’ 범주가 다양하게 규정되기 때문에<sup>2)</sup> 기초

---

1) 시집간 딸에게 부양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양측적(bilateral) 가족구조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부계직계(patrilinal) 가족구조 특성과는 괴리가 있음. 가족구조가 부계직계적 특성을 갖는 사회에서 딸은 부양의무를 포함한 조선봉사(祖先奉仕) 의무가 약하며 반대급부로 상속권리에서 차별을 받음

2) 예를 들어 민법의 부양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가족 범주는 1촌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됨. 그러나 상속법을 기준으로 보면 가족에는 형제자매까지 포함됨(넓게는 4촌까지)

생보제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부양의무자(가족) 범주가 존재하는 것도 아님

- 현재 우리사회의 실제 부양관계의 특징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폐지 또는 범위 축소를 판단할 것임.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의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급여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임

-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요소임. 현재 이미 시행령 등에 기초하여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구속성을 명확히 해야 함.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거나 중증장애인처럼 부양부담이 큰 경우에도 균일한 부양의무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할 것임

## (2) 소득재산 기준관련 내용

- 기초생보 수급권을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방안으로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개별급여로의 전환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대로 가면 수급권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우리당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개별급여 전환 추진 방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이 과정에서 기초생보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재산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수급권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여 비교우위를 정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에서는 현재의 수급권자 선정기준, 즉 최저생계비를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4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을 제시해 놓은 상태임

- 이밖에도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 저소득층의 불규칙하며 낮은 수준의 근로소득(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보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 등도 상당한 민원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기초노령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2) 전달체계 관련 사각지대 해소 입법

- 상담·사례관리·서비스연계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기능이 시군구·읍면동의 제1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 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현재 이 기능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읍면동의 사각지대 발굴·지원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핵심 사안의 하나로 추진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에서는 제정법인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임. 또한 급여신청시 보장기관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등 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음. 이러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 복지전담공무원 충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4. 4월 국회 추진 방안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하지만 그동안 주로 재정적 이유에 가로 막혀 입법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이러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법이 핵심 논의 법안으로 다루어지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사각지대 해소 방안까지 4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함
  
- 더욱이, ‘세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로 인한 취약계층의 잇따른 자살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일정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여야정 모두 상당한 비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야권에서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비난의 화살은 주로 야권을 향할 것임.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가시적인 사각지대 해소 성과를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임
  
- 아울러, 사각지대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생보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4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임
  - ‘행복e음’ 운영 등을 통한 엄격한 자격관리로 지난 수 년 동안 기초생보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엄격한 자격관리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핵심인 것처럼 행정력을 이에 집중하여 기초생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치의 전도임. 기초생보 제도는 ‘적정 규모의 빈곤층 지원’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자격관리로 수급자가 감소하는 만큼, 소득재산 기준 등의 완화를 통해 수급자 수를 늘려야 함. 즉, 기초생보제도는 주어진 자격기준 하에서 일정 규모의 수급자 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제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서 운영되어 왔음. 이는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운영된다는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더욱이 향후 개별급여체계가 도입될 경우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선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과 과제<sup>3)</sup>

대표발제: 허 선 (정책위원장,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현황과 문제점

### ○ 늘어나는 빈곤층, 작아지는 수급자수

- 경제위기 이후 늘어나는 빈곤층의 규모에 비해 기초보장수급자수는 줄어들고 있음.
- 경제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예산의 증가율이 그동안의 연도별 평균 예산 증가율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오히려 줄고 있음.

〈표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추이

연도	수급자수 (만명)	수급율 (%)	수급탈락자 수 (명)	신규수급자 수 (명)
2008	153	3.15		
2009	157	3.22		
2010	155	3.07	172,654	226,875
2011	147	2.90	235,679	137,006
2012	139	2.74	213,679	136,912
2013.6	138	2.71	76,640	67,559

(자료) 보건복지부

3) 본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지키기연석회의의 논의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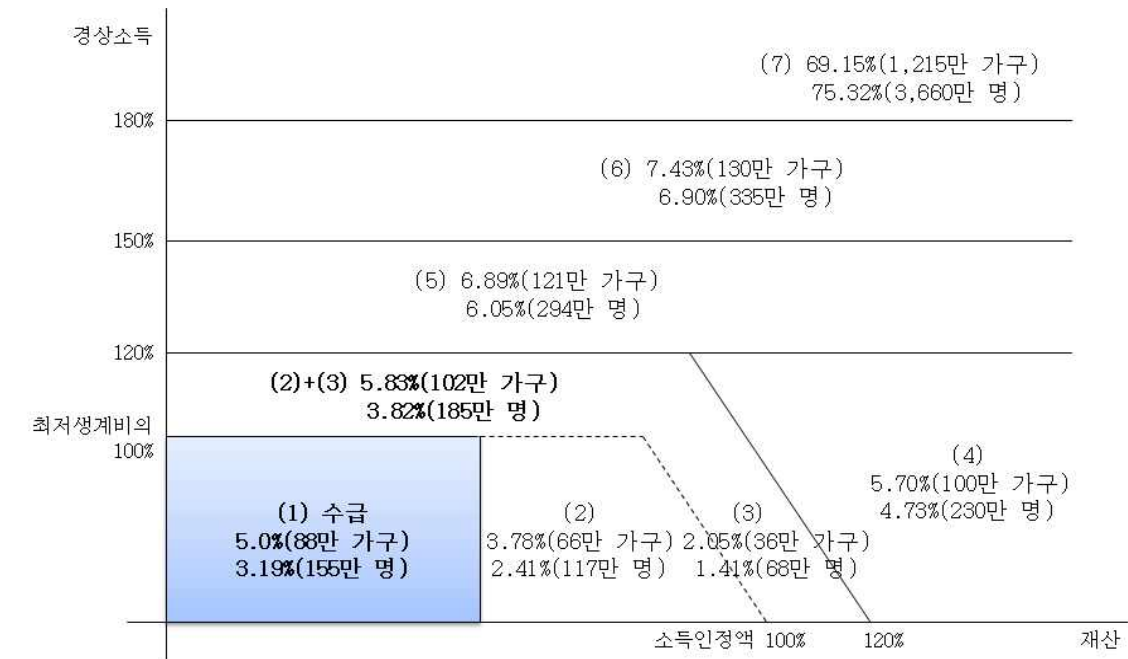
○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계층의 존재

-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고, 생활곤란‘비관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음(예; 송파 세모녀 가구)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극빈층 중 117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사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집단).

○ 세모녀가구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 사회안전망 부실의 종합판적 성격: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주거복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수준, 부양의무자기준
- 사회안전망의 재정비 필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촘촘하게 다시 짜서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함

<그림 1> 저소득층 분포(2010년 기준, 단위: %, 가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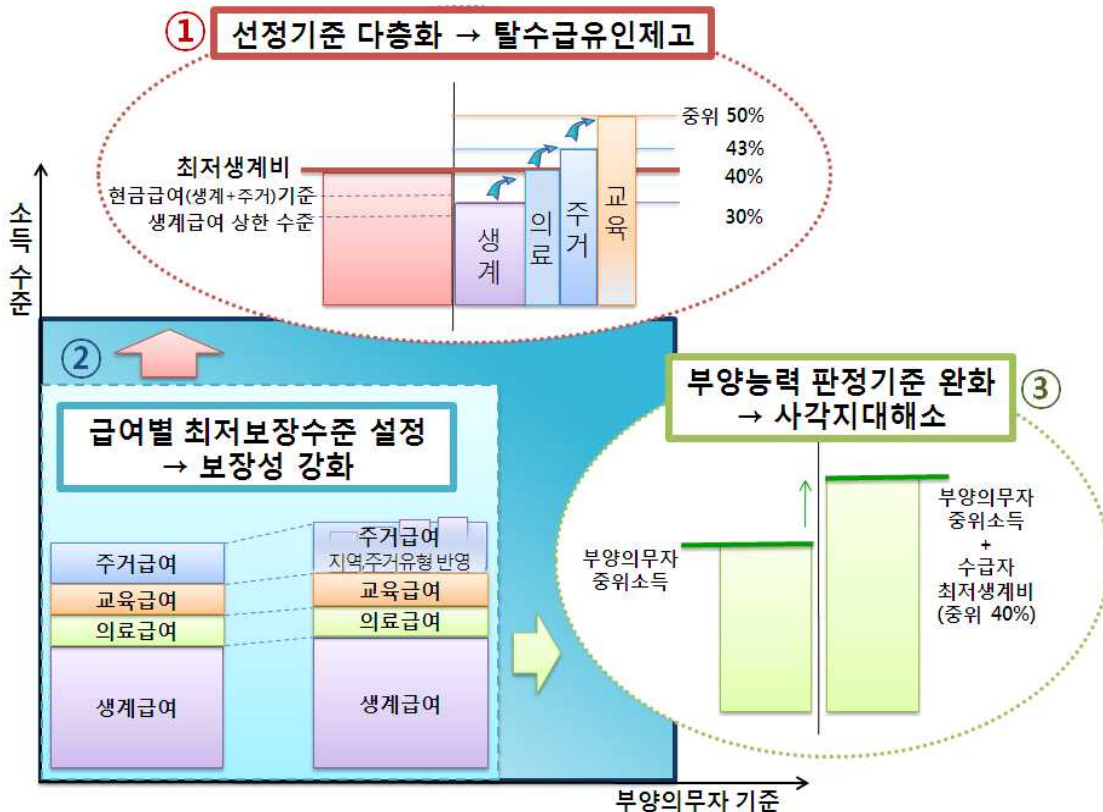


자료: 이태진 외(2011: 196)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정부의 기초보장 개편 계획(안)

- 현행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계로 규정하고 그것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임. 정부에서 말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란 각 급여별로 개별적인 선정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는 것을 뜻함.
- 정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괄 선정·지원하던 방식을 개별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하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는 게 개편 내용의 핵심.
- 이렇게 해서 수급자수를 80만명 정도 늘리는 것이 원래 계획임.

<그림2>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 계획



## ○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

- 상대적 빈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을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보호율을 51%(222만명)에서 80%(340만명)로 높이며, 이와 함께 빈곤층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지원 선정기준의 유연화, 장애인·한부모 등 잠재빈곤층 법정 지원사업 및 기타 저소득층 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 “맞춤형 개별급여” 로의 개편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개편의 이유로 ‘탈빈곤의 유인을 강화’ 하고, ‘사각지대를 해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 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 을 들고 있음.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30%로 하고,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43%, 교육급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50%선에서 정한다는 계획(그림 참조).
- 근로능력자의 경우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며, 자산형성지원(IDA) 확대 등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계속 적용하되 부양능력판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수준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겠다는 계획.

### 3.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

#### 1) 정부(혹은 연구진)의 의견 및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

- “지금처럼 모든 급여에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 ==>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수준을 넘는다는 전제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 현재의 급여체계(?)는 “근로빈곤층의 취업촉진이나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빈곤선에 가까운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대다수 근로빈곤층이 근로소득의 일부 증가로 모든 급여를 포기해야 한다면 일할 이유나 탈수급할 이유가 없다” . ==> 급여체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동의함.
- “각 급여의 급여수준을 빈곤가구의 특성에 맞게 다원화할 수 있어야 한다” . ==> 각 가구 상황에 맞는 욕구 맞춤형으로 공평하게 선정 및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동일 소득기준 이하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여야 한다” . ==> 부양의무자기준의 대폭확대에 전적으로 찬성
- “급여별로 소득기준을 다층화 하여 각급여의 특성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 및 탈수급을 촉진해야 한다” . ==>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및 재산기준과 같은 다른 기준도 다층화가 필요함.
- “사각지대를 해소함에 있어 1~2개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증가할

수 있게 물꼬를 트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비수급빈곤층 혹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은 기초법 시행과 동시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여 오던 것으로 매우 찬성함. 다만 기존의 수급자에게 해당사항(욕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급여만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됨.

참고: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 (13. 5.14)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 (요약) 출처 :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2013. 9) 회의자료

□ 제도 개선 추진 방향

- 빈곤 전략시 재기할 수 있는 빈곤 예방 체계 강화
-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두터운 보호
-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주요 개편 방안

- ① 빈곤정책 대상 확대 및 예방적 지원 강화
  - 상대적 빈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 확대(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화
  -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전체적 수준이 감소하지 않도록 설계 (경과조치 마련)
- ③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④ 원활한 부처간 복지사업 연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일부 현물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바람직함. 일부 현물급여 뿐만 아니라 모든 급여에 해당되어야 함. 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의 마련이 필요함.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함. 수급 탈락 가구의 주거와 치료비를 부양의무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탈락 가구는 거리에 나앉아야 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위소득의 상승률과 최저생계비의 인상률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일반가구와 수급자가구의 생활수준의 상대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왔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켜나가는 상대적 빈곤개념에 의한 소득기준 설정에 동의함.
- “주거급여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가장 저발전된 급여중 하나이다.” ==> 주거급여는 태생의 한계가 있음.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료급여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아픈 사람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주거급여의 경우도 가구의 주거상황에 맞게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정신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에 기본법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 ==> 단절된 개별급여가 되지 않고 각 급여별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규정해 두어야 함.
- “각 급여는 영역별 급여이며 해당분야의 복지제도와의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정책 외에도 전세자금 융자나 자가 가구 지원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 의료급여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료보장정책의 맥락에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 주거급여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한 등 각종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과의 연계성, 각 가구별 주거보장의 형평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 2) 정부계획(연구진 안 포함)상 우려되는 점

-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는 찬성하는데, 왜 그와 같은 방식의 개별급여를 실시하려 하는가? 개별급여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기초보장제도를 연성 예산화 하고, 근로능력자를 기초보장제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 축소와 예산축소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 기존의 수급자에게 주던 것을 나누어.. 신규수급자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 왜 현 제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요구해오던 방식대로 개편하려 하지 않는가?
- 정부에서 마련한 안이 정말 욕구맞춤형인가? 욕구별 맞춤형 급여는 현행시스템이 더 적합함. 공제제도를 잘 활용해야 함. 제도 설계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는 구별해야 함. 개편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임. 현재 운영상 평균적 비용을 전 가구에 강요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별 욕구맞춤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임. 지역별 물가차이, 주거유형, 장애유형 등, 가구원의 연령 차이로 인한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진정한 욕구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성 급여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 현행법상으로는 최저생활의 보장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최저생활을 최저생계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 ‘개편방안’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비율(30%)를 고려한 상대적 방식에 의해서 급여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법에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거나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편 이후에는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이 임의적으로 낮추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최저생계비와 각종급여 소득기준선과의 관계를 상대적 수준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최저생계비는 이미 우리나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보장해야할 소득수준을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굳이 대체할 이유가 없음.

(2)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가구를 분리하여 차등적으로 처우(부정적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

- 그동안 개별급여를 주장하던 학자들 중 일부가 근로능력자를 기초보장제도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식 문서인 ‘개편방안(정부부처 합동, 2013.5)’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무능력 가구”와 “가구별 지원기준 이상이나 의료욕구가 있는 희귀·난치·만성질환자 등 저소득층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능력자가구의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 이렇게 되면 희귀·난치·만성질환자가 아닌 근로능력자가구원의 경우는 의료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임.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혜택이 건강보험가입자의 혜택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근로능력자에게는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밝힌 점을 통해 추정해 보면 일부 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 기존 생계급여의 혜택보다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현재 까지 마련된 정부의 계획안과 법안을 볼 때 근로능력자가구를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구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다른 복지정책 결정과정을 통해 볼 때, 입법과정 혹은 법 시행 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

(3) 수평적 확충보다 수직적 확충을 우선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가 심각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정부의 계획(안)대로 시행된다면 극빈가구는 기초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채 오히려 차상위에 속하는 가구가 수급자로 포함되는 기이한 결과가 만들어 질 수도 있음. 이러한 기이한 결과를 예상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됨. 정부의 계획상 부양의무자기준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재 발표된 개선안으로는 매우 소규모의 대상만 수급자로 포함될 뿐 상당수의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까지 마련한 개편안을 볼 때 교육급여의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제외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나머지 개별급여의 경우 현행 방식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여전히 대규모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게 됨.
-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정부추계로만 약 117만명’ (’10년 빈곤실태조사)이나 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뒤로 한 채 차상위계층에게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방향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대상을 위로 늘릴 것이 아니라 수급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구를 수급자로 편입하는, 즉 아래 혹은 옆으로 대상을 늘리는 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급신청 탈락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과 재산 모두 중위수준 보다 많은 가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소

득만 기준보다 조금 많거나 재산만 기준 보다 조금 많은 가구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동시에 평균소득과 평균재산 보다 높거나 많은 가구의 경우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그러한 가구의 피부양가구가 수급신청을 할 만큼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가구는 극소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양의식의 변화와 부양실태 등 현실에 맞게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은 필요함.

**(4) 개별급여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종합급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개별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맡게 되면 각급여의 연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개별급여는 수급자에게는 커다란 혼란을 주게 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중복·낭비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보다 면밀한 연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요약하면 정부의 개편방안(혹은 법률안)은 수급자수를 늘리고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 국민을 현혹할 만한 여러 요소를 갖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권리성 급여에서 행정부의 재량형 급여제로 전락시키는 졸속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4. 현행 기초보장시스템의 장점

### 1) 현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 “각 급여를 실제 욕구에 맞게 다원화하는 순간, 최저생계비 개념을 사용하기 힘들며 각급여의 최대급여수준을 표현할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현 최저생계비가 모든 급여의 최대 급여수준의 합(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저생계비 개념을 계속 사용하기 어렵다”
- “최저생계비라는 단일한 선정기준을 모든 급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현시스템은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고, 급여의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탈수급을 촉진하는 기능이 취약하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사각지대 해소에 둔감한 구조다.....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으로 최저생계비라는 단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유연한 전략을 선택하기는 힘들다.”
- “제한된 재원으로 더 많은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2) 최저생계비와 소득평가액의 기능에 대한 이해

-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특히 소득평가시에 하는 공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공공부조의 주요한 원칙인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 형평성을 위한 장치로 기초보장제도에 들어있는 방식은 보충급여, 현물급여, 필요비용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최저생계비는 평균적인 개념임. 각 가구의 최저생활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단순화하는 것은 행정편의상 조치일 뿐이고, 각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정과 급여시 그것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설계됨. 현재의 정부에서 공표하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표준가구(건강한 젊은 부부, 초등학생 2인, 주거형태 전세가구)의 최저생계비일 뿐임.
- 따라서 최저생활을 위해서 가구마다 필요로 되는 추가 비용(예; 만성질환 병원비, 고교학비, 주거비 차이 등)은 선정과 급여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최저생활의 보장’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운영상으로는 선정과 급여에서 추가 필요비용의 일부(병원비, 학비)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임.
-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는 실제 주거여건이 나쁘다면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현물이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고, 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는 무상 치료가 현물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혹은 월세가구를 전제로 한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설계에 맞는 제도 시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하지 않음.
- “최저생계비라는 단일한 선정기준을 모든 급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현재도 3층구조(현금급여기준선,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선)로 운영되고 있음. 정부

에서 마련 중인 개별급여는 현재 소득기준의 3층 구조에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을 다르게 하는 4층 구조로 변환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음. 하지만 소득기준의 다층화뿐만 아니라 부양기준과 재산기준의 다층화의 필요성도 감안해야 함.

- 최저생계비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으로서의 최저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님. 최저생계비수준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음.
- 최저생계비를 현 수준인 중위소득의 40%로 못박는 것에 동의함.
- 현재 사각지대가 큰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예산 편성에 인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다시 말해 의지 부족의 문제임.

## 5. 기초생활보장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 1)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혁일 뿐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것임

-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1998년 외환위기에서 중산층의 대량 실업과 다수의 빈곤화라는 상황에서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실정법으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 당시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시민·사회·종교계를 모두 망라한 범국가적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기념비적 입법의 산물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국민들 누구든지 국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라는 빈곤선 이하의 경제적 형편에 처한 경우 국가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 이상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가구별 욕구와 상황에 따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는 욕구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음.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권리성 급여를 약화시키는 개악을 위한 시도라고 보여짐.
- 일부에서 지적하는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정부에서 예산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의료급여처럼 현행법 체계에서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혁 요구를 무시해 왔음.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를 양산하였고, 차상위계층과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예산 부족 등 문제로 회피하여 왔음.

## 2) 현행법을 유지하면서도 다층급여체계의 마련이 가능하고 더 적합함.

- 현재의 기초보장시스템과 정부에서 마련 중인 새로운 시스템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다층구조라는 점. 급여별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층화 하지 않으면 제도 개편의 실익이 별로 없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모든 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기준액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수평적 수급자의 확대는 여전히 어려워짐.
- 일반적으로 각국가에서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구조로 하는 이유는 탈수급의 유인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기능 때문임. 하지만 현재 마련된 정부 개편안으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워 보임. 오히려 또 다른 함정 유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다만 개별급여를 해야 하는 이유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탈 수급의 유인을 위해서임. 개별급여로서 주거급여는 현물로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금을 지급해야 함.
- 재산기준은 각 급여별로 기본재산액을 달리 하여야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정규모의 주거용재산은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함.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안과 같이 수직적 확충 위주로 하게 되면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수평적 확충에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임.

### 3) 유기적으로 연계된 급여체계 개편 방안의 마련

- 유기적으로 연계된 급여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절된 개별급여가 시행되지 않게 하려면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런 측면에서 현행 시스템에서 현재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각급여별로 개별법을 만들되, 상대적 수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과 연동되는 각급여별 소득기준을 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필요함.

### 4) 사각지대 축소와 수급자의 수평적 확충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 현재 마련된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안(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수급 빈곤층의 13%만이 신규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될 뿐임. 정부계획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크게 완화시키는 계획이 아님.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개정안을 볼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하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시행령에 전부 위임한 것에 불과하며, 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완화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임.
- 변화된 부양의식과 부양환경을 감안할 때가 되었음. 정부가 100여만 명의 비수급빈곤층의 존재를 밝히고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 정부가 가난한 부양의무자에게 더 이상 부양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현재는 정부에서 부

양능력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정하고 그 부양의무자에게 떠 넘기고 있는 방식임.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고, 부양의무자가 방치한 수급권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함. 현재 연말정산의 경우 실제부양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평균적인 개념의 부양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을 실제금액의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적극적 방식의 부양유도 정책의 마련과 함께 부양의무자에 의해 방치된 수급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도 필요함.

-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연구도 하지 않은 채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마련 가능할 것임.

## 5) 최저생계비 개념의 유지

- 국민에게 헌법적 가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가 구체적 수치로 공표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여타 사회제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함.
- 다만 정부에서도 주장하듯이 최저생계비는 상대빈곤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40% 수준으로 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년 공표하는 것이 가능함. 뿐만 아니라 여타 개별급여의 경우는 생계급여(예; 최저생계비의 80%), 의료급여(예; 최저생계비의 120%), 주거급여(예; 최저생계비의 130%), 교육급여(예; 최저생계비의 150%)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실제로 우리나라 자산조사방식의 수십가지 사회보장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선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경우, 재정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퇴나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음
- 정부에서는 현물급여의 선정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서 정하려고 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소득기준은 왜 의료급여선 보다 더 높게 하려고 하는가? 최저생계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이유는 탈수급 유인과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게 1~2가지 급여라도 주기 위함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음.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한가지 급여라도 받아야 나갈 유인이 되기 때문임. 정부의 개별급여 개편안에도 그와 같은 이유로 소득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와 연동시키는 이유는 단절된 개별급여를 방지하고, 논리의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는 권리성 급여를 유지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6) 제도개편의 취지(탈수급 확대)를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함

- 탈수급과 빈곤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련된 개편안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장려세(EITC)와 같은 제도를 현재와 같이 빈곤계층의 일부가 아닌 전체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또 다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수급자가 아닌 가구와 수급자 가구간의 소득 및 복지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불가피함.

- 수급자 가구소득이 인상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될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 내 중증질환자가 치료받을 때까지,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대학졸업 할 때까지는 그대로 해당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혜택이 유지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만 진정 탈수급·탈빈곤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마찬가지로 탈수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전세자금융자제도 지원, 혹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권한 등도 계속 유지되는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어야 탈수급의 유인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7) 기타 사항

### □ 의료급여

- 그동안 개별급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구호(예; 의료급여 한가지라도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정부 계획상으로 볼 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구호임. 수급자 선정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임. 수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제도의 의료급여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임. 개별 급여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각종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 주거급여

- 주거급여에 있어서 형평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특히 주거형태가 월세인 가구는 다른 주거 유형에 비해 생계비로 쓸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송파세모녀가구 사건을 통해 잘 알려진바 있음. 소득평가액을 결정할 때 월세의 경우 가구별 지출요인을 감안하여

일정부문의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함. 수급자 선정과 급여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급여시에만 일부 고려하는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음.

□ 자활급여

-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의 이유로 탈빈곤과 탈수급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능력자가구의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음. 일부에서 우려하는 근로능력자가구에 대한 보장성 약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함.
- 급여별로 다층형 선정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자활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은 주로 아동 및 학생이 있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급여

- 고교무상교육이 현정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마련중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은 매우 미약한 수준임.
- 저소득층가구에게는 미취학아동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교육급여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교육급여를 개별급여로 확대하는 의미를 감안하여 아동부조적 성격의 제도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 빈곤아동수가 60만명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식과 내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 가구 특성에 맞게 욕구맞춤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지출요인으로 현행의 교육비, 의

료비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공제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우 많은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의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바 있음. 장애로 인한 비용은 급여시에만 고려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선정시에 동시에 고려해야만 공평한 처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대안검토의견

〈 '14.4.8,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 1. 최저생계비의 산정방식 개선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전년도 혹은 3년 평균’ “도시근로자가구 중위소득의 40%가 되도록” 명문 화함(안 6조 1항).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80%” 로 정하여 현재 생계급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함. 또한, “생계급여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의 80% 이상” 으로 보충급여의 성격을 유지하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을 분명히 함(안 8조 2항).

## 2.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규정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자 빈곤 가구의 재생산을 촉진하고 있음. 민법상 가족간 부양의무(민법 제974조)가 공공부조의 수급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안 제2조 제5호, 제5조 제1항 등).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식은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법적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일본의 경우

도 민법상 부양의무 규정이 있으나, 1990년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활보호법상 수급자 선정요건에서 제외하였으며, 민법상 부양의무는 생활보호에 우선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형식적인 전제규정만 존재함<sup>4)</sup>. 부양의무자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적 부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대 복지국가에 맞지 않으며, 사적 부양의무의 이행을 장려하는 보완책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삭제하되, 민법상 부양의무는 유지하고, 사적 부양의무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부양가족공제를 일괄공제가 아닌 실제 부양액수(최저생계비 한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는 등 보완책을 도입하면, 사적 부양의무 이행의 회피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음.

### 3.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실제 소득이 없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함. 기존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제10호, 안 제20조 제2항 3호 신설).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

4) 국회입법조사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0.12.30) 참고

명문화하고 이 기본재산은 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밖에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으로 소득환산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으로 규정함(안 제 2조 10의1)

#### 4. 추정소득 근거조항 삭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실제 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정소득 근거조항을 삭제(안 제2조 9호)

#### 5.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 (1) 자활사업 참여를 생계급여 지급 조건에서 삭제

수급자의 실질적인 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생계급여 지급의 조건에서 삭제하고 수급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제9조 5항)

##### (2) 제도운영에 수급자 참여 보장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권리보장과 수급권자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수급자의 권리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제20조 3항 4호 신설).

(3) 수급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권 보호 등 권리구제 제도 개선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내용 및 급여의 변경, 신청조사의 과정에서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제21조 6,7,8항 신설,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29조), 만약 불합리한 결정과 불이익에 대해 이의신청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급여혜택에 불이익이 행해져서는 안 됨(제38조 1항, 2항, 제 39조, 제 40조)

급여신청 시에도 적극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함.(제21조 3항 단서신설) 한편 수급자의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함.(제48조 ①,②,③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 토 론

노들장애인야간학교 학생

이영애

---



# 자립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은 나의 꿈

노들장애인야학 이영애

## -장애를 입게 된 과정

한 살 때 경기를 해서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가 엉덩이에 주사 한방을 놓으니까 열이 싹 내렸어요. 열은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 기거나 걷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애기가 가끔 가다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손, 발을 움직일 수도 없고 엄마가 물건을 손에 쥐어 주면 그 물건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앉혀 놓으면 쓰러지고 그랬어요.

## -외출의 기억

그 당시에는 휠체어를 탈 생각도 못했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비싸니까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가끔씩 오빠가 나를 리어카에 태우거나 안고 바깥을 나가는 경우가 외출의 전부였어요. 32살까지요. 3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 -학교의 기억

8살 때 취학통지서가 나왔는데 그걸 엄마가 보고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왔는데 어떻게 애를 학교에 보낼 수 있나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옥신각신 하다 취학통지서를 찢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단 한 번도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장애가 없는 동생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학교 가고 싶다” 는 생각 자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학교 갈래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너를 학교 데려갈 사람이 누가 있니? 오빠도 동생도 모두 학교 가는 데...” 그래서 포기했죠.

당시에 학교를 다녔다면 한글을 좀 더 일찍 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나이 먹고 한글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야학에서 한글을 다 떼고 처음으로 읽은 책이 ‘도가니’ 라는 책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노동. 업무조차 못 낼 일.

일할 업무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활동보조도 없고 누가 바깥에 데리고 나가야 일을 할 텐데 바깥에 데려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포기했죠. 나 같은 장애인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동료상담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32살 이전까지는 엄마, 오빠, 동생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돈을 저금통에 차곡차곡 저금했어요. 세 달 정도 모으면 3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저금 하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했고 가족들이 그 돈을 조금씩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32살에 야학을 다니며 장학금을 받게 됐고 덕분에 통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02년, 32살에 첫 통장을 만들었던 거죠.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다 보니 적금이 들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장학금 7만원 가지고 무슨 적금을 들겠어요. 용돈하기에 바쁘지. 적금 모아서 나중에 자립할 때 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도 장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요즘 일상

요즘은 야학에서 하는 장애인인권교육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쉽 없이 일하다 보니 감기에도 걸렸어요. 며칠 전에는 울산장애인부모회에서 초청을 해줘서 울산까지 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왔어요. 울산도 처

음 기차도 처음 타봤어요. 기차를 처음 타보니 눈이 휘둥그레 해 졌어요. 내가 기차도 다 타보는 구나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인권교육 다니는 거 말고 일상이라고 한다면 집에 있거나 활동보조 선생님과 영화 보러 가거나 쇼핑 하러 가거나 그 정도예요.

#### -재정상황

조금 쓸쓸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인권교육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그리고 야학에서 받는 장학금 7만원, 장애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1만 원 정도예요. 합치면 70만원. 차상위계층에서 떨어지기 전에는 장애연금으로 20만 원 정도 들어 왔었어요. 근데 동생이 세금 적게 내려고 제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상위계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동생이 회사를 그만 두고 다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새 집값이 올라 차상위계층이 안된대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한 2억 정도 하나 봐요. 하지만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아버지는 80이 넘으셨고 어머니는 80이 다 되세요. 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으세요, 일을 조금만 하면 숨이 차서 심장약을 드셔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얼마 전 허리수술을 하셨어요. 물렁뼈가 고장이 났대요. 수술을 두 세 번 하셨는데 지금도 걷기가 힘드세요. 병원비도 제가 냈어요. 그 동안 적금 500만원 부었던 거 깨서 병원비하고 약도 지어 드리고 했어요. 전에는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파지도 줬고 했는데 수술한 후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은 부모님 모두 쉬고 계신 상태예요.

집안의 수입이라곤 월세로 들어오는 수입 25만원과 제 수입이 전부예요. 그런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차상위계층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립생활을 준비하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적금도 붓고 교육도 받고 있어요. 수급권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면?

부양의무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 신청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 같아요. 나도 자립해서 집도 예쁘게 꾸며 놓고 재밌게 살고 싶어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 토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노대명

---



# 토 론 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노대명

## I. 공청회 발표문들에 대해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편을 둘러싸고 이처럼 뜨거운 논쟁이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주장들이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솔한 논의가 필요함. 가까운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음
- 이 공청회에서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세 편의 원고는 최근까지 있었던 의견대립에서 진일보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여전히 몇 가지 다른 주장이 있지만, 이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 점에서 오늘의 발표문들은 어느 때보다 높은 의견수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2.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새정치민주연합)의 발표문에 대해

□ 이 발표문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하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사항임.

□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공공부조를 넘어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의 확대·개편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공공부조제도에만 맡겨두어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이는 단기적으로는 공공부조가 중심이 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하지만,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통해 그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 사회보장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줌.

○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일차적으로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에 동의함.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회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한다고 그 해소효과가 클 것인지는 미지수.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이후 약 9년의 경험이 이를 말해 줌. ☞ 지금은 보다 현실적인 선정기준 완화가 필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 특정집단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안 : ①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범주에서 제외, ② 중증장애인, 시설퇴소장애인 등에게 부양의무기준 미적용, ③ 65세 이상 노인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특정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안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는 방안

☞ 특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집단에 대한 기준 미적용과 급여제도별 미적용 방안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일 것임

- 둘째,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의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음
  - 이 발표문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이 방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의 상징적 의미를 보존하고, 소득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대로 최저생계비 개념을 설정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사회보장기본선의 의미를 갖게 되며, 실제 각 급여의 급여수준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 3. 허선 교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키기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의 발표문에 대해

- 복지사각지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제반 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한 허선 교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함
  - 정부(연구진) 개편안에 대한 동의와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공감함.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허선교수 또는 시민단체가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정부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 권리성 급여의 훼손 문제 :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정한다면, 권리성 급여가 훼손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 최저생계비 개념이 담당해 왔던 사회보장기본선으로서의 기능을 이 개념을 그대로 쓸 것인지,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것인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음

-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차등처우의 문제 : 현재 연구진 의견으로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배제나 차별처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다만 급여의 적용방식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그것은 다른 성격의 빈곤층이기 때문임. 우리사회에서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수평적 확장과 수직적 확장의 우선순위에 대해 : 물론 수평적 확대가 선결과제임. 하지만 현실에서 복지사각지대와 사건사고는 그러한 순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그것은 욕구의 성격에 따라 수직과 수평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 단절된 개별급여보다 종합급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 □ 개편방안 관련 제안에 대해 (11쪽 하)

- 각 급여별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다층화에 대해
  - 이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함. 다만 제도개편 초기단계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급여체계 개편이후 후속과제로 명확하게 의제화하여 개편해야 할 것임
- 주거용재산 기준의 완화에 대해
  - 주거용재산의 일정금액을 기본공제선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함. 추가적으로 소득평가액을 유지하고 재산의 소득환산방식의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을 덧붙이고자 함
- 최저생계비 개념의 유지에 대해
  - 중위소득 40%를 최저생계비로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음. 다만, 최저생계비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함.

- 법령에 중위소득의 수치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하자고 함. 지금까지의 경험상 선정기준이 후퇴할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중위소득의 00%를 고려하여 중생보위에서 정한다”는 것임
- 덧붙이자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중위소득의 수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4. 맺으며

- 우리사회가 빈곤층 지원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
  - 기초보장제도 시행이후 십 수 년 간 왜 수급자 규모가 증가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과 의료급여 증가분을 감당하는데 급급해 왔기 때문임
  - 결국 사각지대 해소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 재원확보와 그에 따른 예산배분의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도설계임.
  - 우리 모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사건 이후에 대해
  - 토론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이후의 과정을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보다 선정기준 완화가 필요하

며, 빈곤층이 낙인감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감성적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모든 급여를 그리 확대하기 힘들다면, 지금은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는 금번 제도개편방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어야 하고, 이후 후속 과제로 계속 개선해야 하는 사안임
  - 1) 의료급여는 실질적인 소득평가액 기준 적용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하고,
  - 2)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금액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물론 각 급여제도의 합리화와 효율화가 필요함.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사각지대 해소에 맞추어져야 할 것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 토 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이찬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1. 문제 제기

- 0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체  
많은 빈곤층들에게 욕구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음.
- 0 이와 같은 공약을 기초로 하여 정부는 현 제도의 골간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급여  
생계비와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현금급여인 생계급여( 및 욕구가 있는 가  
공)와 수급자 전원에 대한 현물급여인 의료급여와 욕구가 있는 가구에 대한 교육급여  
1)현행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등으로 분리시켜서 수급자 선정  
시키고(다만, 생계급여에 대하여만 최저보장수준이 선정기준이자 급여수준으로 작동  
준 역시 행정부의 재량에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편법  
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재중 의원안으로 계류 중에 있음.

0 그리고, 유재중 의원안은 의원입법 형식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최초 개정법률안으로서 시인하고 있는 입장임. 전 국민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국가적인 입법 과제를 행정절차법상의 2개월 이상의 국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뒷문 입법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입법과정에서 반대를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는 반민주적인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

#### 0, 기초생활보장법개정 관련 여‘야‘정의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잠정 합의의 검토

- 정부는 지난 2013. 6월경 유재중 의원안으로 발의된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형식으로 1-2차례 검토의견 형식으로 작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를 요청하였으나 동 법안은 모두 심의가 보류된 상태가 되었음. 그리고 지난 2013. 322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및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대안을 지지하는 전문가와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불러 법안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야 ‘정은 개정법률안의 심의의 조건으로 법률에 명시한 기준을 중위소득의 40%로 한다. 2)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상으로 한다. 3)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 조문에 명시하여 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률안을 제시한다. 5) 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범위는 최소화하는 안을 정부가 가져 오면 법안을 심의하기로 합의한 핵심적인 내용임.

- 그런데, 이틀 후인 제324회 2.20.자 제4차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차관들은 322회 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그들 스스로 약속한 안을 전혀 준비해 오지 않은 원발의 입법이어서 자신들이 법안에 없는 새로운 조항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인 양 결국 법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한마디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의 조항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임.

## 0 보건복지부의 발제에 관한 총평

- 이 번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주최한 본건 공청회에서의 정부의 발제문-2. 18.자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문건에서 pp3-4의 참고1 표를 분리하여로 옮긴 것과 p15. 표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3개월” 을 “공포 후 1개월” 로 것 이외에는 단 한 문구도 고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음. 결국 보건복지부는 정부이며, 기획재정부 협의조차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약속한 대안 준비조차 하지 않은 말만 반복하는 발제를 하는 것에 불과함.
- 정부는 원래 이번 공청회에서 최소한, 1) 중위소득의 정의, 결정방법 2) 부양의무자 생계비를 중위소득의 40%로 명시한 최저생계비 조항(이것이 의료급여법에 연동되기

4) 생계급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충 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30%기준 명시  
여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 선정기준 % 명시 조항 등을 정부가 마련하여 발표하여야  
시민사회계가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주된 취지였음.

-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발제는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잠정 합의된 안조차도 뒤집는  
건복지부의 발제문이 현 정부가 밀어붙이겠다는 입법의 최대치인 것임을 알 수 있  
정부의 검토안을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또 다시 앵무새처럼 반박하는 것이 무슨 의  
는 것이 토론자의 솔직한 심정임.

## 2. 개정안/수정검토안에 대한 검토의견(수정검토안을 중심으로)

### 가. 표를 통한 비교/검토의견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현행과 같음)</p> <p>5. "부양의무자"란 <u>수급권자</u>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p>	<p>* 수급자 선정시 부양비용징수 기준으로 완화 효과있음-</p>
<p>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u>공표하는 금액</u> 등을 말한다.</p>	<p>6. "<u>최저보장수준</u>"이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u>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급여의 금액이나 보장수준</u>을 말한다.</p>	<p>최저생계비는 우리도출되는 실제의량적인 기준으로이에 반하여 최저보와) 중생보위의의 규정상의 최</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는 없는 모순이 개념적으로도 공부 는 차별적인 발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의 '최저선'이며 뿐만아니라 최저임 한 지표로 작용하 국민에 대한 최저 많은 사회적 혼란</p>
<p>7.~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p>	<p>7.~10. (현행과 같음)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lt;신 설&gt;</p>	<p>12.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국민가구 소득’이라는 위소득의 개념으로 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범위를 최소화</p>
<p>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p>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으로 작동하게 보장수준이상이 되어야 함.</p> <p>현재의 규정은 급여 없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lt;삭 제&gt;</p>	<p>제5조 (개정안과 같음)</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u>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u>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u>최저생계비</u>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p>	<p>제6조(<u>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u>)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u>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u>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p>	<p>2조 6호 관련 의견 참조</p> <p>최저보장수준 관련 수 정기준은 별도로 정 식이며, 의료급여는 현금급여인 교육급 여 있음) 주거급여에 한지조차 의문임.</p> <p>심지어 급여기준으로 는 것으로 실제 직 우 최저생계비 폐지</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u>최저생계비를</u> 공표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lt;신 설&gt;</p>	<p>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u>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u> 공표하여야 한다.</p> <p>(개정안과 같음)</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계층의 규모,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의2(빈곤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빈곤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제7조(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u>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제7조(급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u>&lt;후단 삭제&gt;</u></p> <p>③ (현행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u>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u></p>	<p>0개정안은 수급자 지부장관이 정 체하여 백지위 급여가 아니라 김.</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당하는 금액(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0 수정검토안은 수 않은 채 증생보위 국 이 역시 권리특 함으로써 예산에 수급권을 크게 후 0현재와 같은 권리성 위소득의 30%에 해 법률에 기준을 명기 0 이렇게 되면, 생계급 충급여의 형태를 갖</p>
<p>&lt;신 설&gt;</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u>유지·수선비</u>, 그 <u>밖의</u>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u>주거급여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따로 법률에</u> 서 정한다.</p>	<p>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u>수선유지비</u>, 그 <u>밖의</u>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0주거급여를 굳이 현 대주택임주권 등 현 의 실질을 보장할</p> <p>0주거급여법 5조1항 부장관이 정하는 되어 있어서 급여 이 조항 역시 “가 요가 있음.</p>
<p>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u>교육급여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따로 법률에</u> 서 정한다.</p> <p>&lt;신 설&gt;</p>	<p>제12조(교육급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교육급여는 <u>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u> 한다.</p> <p>③ <u>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u></p>	<p>수급자 선정기준을 정</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p> <p>④ 제3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p>	<p>명시하여도 현재의 크게 부담되지 아니 조성하는 관점에서</p>
<p>제12조의2(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p>	<p>제12조의2(의료급여)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p>	<p>최저생계비를 대체하 확대하려면 정부안 금액 이하로 수급권</p>

개정안(유재증의원안)	수정검토안	
<p><u>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u></p> <p>&lt;신 설&gt;</p> <p><u>③ 의료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u></p>	<p><u>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u></p> <p><u>③ 제2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u></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해산급여) ① <u>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해산급여) ① (개정안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장제급여) ① <u>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u></p>	<p>제14조(장제급여) (개정안과 같음)</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강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급여의 특례) 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p>	<p>제14조의2(급여의 특례) <b>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b>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b>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b>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p>	<p>0 현행 5조 2항과 사</p>
<p>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제6호를 위한 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p>	<p>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개정안과 같음)</p> <p>7. (개정안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b>제1항제6호에 따른 관리를 위한</b> 시스템은 「사</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u>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u>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u>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u>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3(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u>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u>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u>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u>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u></p>	<p>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u>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7조의2(자활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u></p>	<p><u>제17조의2(자활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u></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 구에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및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 <u>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u>에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8조의2(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u>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u> 정비율 이상을 <u>수급자 및 차상위자로</u>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u>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u>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u>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의2(고용촉진)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u>수급자 및 차상위자가</u>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보장기관은 <u>수급자 및 차상위자가</u>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보장기관) ① (현행과 같음)</p>	<p>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u>특별자치시장·도지사</u>·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u>특</u></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u>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이 실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u>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u>시·군·구</u>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u>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u></p>	<p>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b>&lt;개정안 단서 삭제&gt;</b></p>	<p>개정안 관련의견 : 단 이 되는 사항들에 다 관들과 위원들이 주 장위원회에서 결정 급여 등은 예산에 기존 의 민주적 거버</p>
<p>1. <u>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u></p> <p>2. <u>소득과 재산의 수준 등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의 결정</u></p> <p>3. <u>급여 종류별 급여의 수준 및 내용의 결정</u></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u></p> <p>3. <u>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u></p>	<p>정작 급여의 기준은 보 보장수준이 급여기준에 제가 심각함.</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4. <u>최저보장수준의 결정</u></p> <p>5. 제6조의2에 따른 빈곤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6. 제20조의2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p> <p>7. <u>급여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u></p> <p>8.·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16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1.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p>	<p><u>&lt;삭 제&gt;</u></p> <p>5. <u>제6조제4항</u>에 따른 빈곤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6. (개정안과 같음)</p> <p>7. <u>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u></p> <p>8.·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이나 수정검토안 하지 않고 위원회의 하는 결과가 될 것임.</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u>5명</u> 이내</p> <p>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u>5명</u> 이내</p> <p>3.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u>5명</u> 이내</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급여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u></p> <p><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u></p>	<p><u>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기준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u></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20조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u>중앙생활보장위원회</u>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21조(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1조(급여의 신청) ① <u>수급권자</u>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u>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u>시장·군수·구청장등</u>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군수·구청장등</u>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u>시장·군수·구청장등</u>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④ ~ ⑧ (현행과 같음)	<p>양 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23조(확인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확인조사) ① <u>시장·군수·구청장</u>등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하여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제24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① <u>시장·군수·구</u>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u>청장등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 법에 따른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u></p> <p>② <u>시장·군수·구청장등은</u>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 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현행과 같음)</p>	<p>제2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b>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b>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 <b>시장·군수·구청장</b>들은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b>시장·군수·구청장</b>들은 제2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b>시장·군수·구청장</b>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b>30일</b>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b>60일</b>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b>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련 법률</b>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p>	
<p>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p>	<p>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② (현행과 같음)</p>	<p>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u>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u>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u>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p> <p>② <u>시장·군수·구청장</u>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u>시장·군수·구청장</u> 등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b>시장·군수·구청장등</b>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b>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b>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③ ~ ⑤ (생략)	③ ~ ⑤ (생략)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u>시장·군수·구청장등(제7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u>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u>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u> 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② (현행과 같음)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도지사가 제 38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u> )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 <u>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u> )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 <u>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u> ) ① 제 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유재증의원안)	수정검토안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u>이내</u>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4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10일 <u>이내</u>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p>	<p>시·도지사를 거쳐 <u>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u>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u>이내</u>에 <u>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4호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u>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개정안(유재증의원안)	수정검토안
<p><u>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④ <u>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u></p> <p>⑤ <u>교육급여에 관하여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4호에 관한 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u></p> <p>②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한 경우에</u></p>	<p>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lt;개정안 단서 삭제&gt;</u></p> <p>②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u></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한한다), 해당 시·도지사 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lt;단서 신설&gt;</p> <p>③ 교육부장관은 제40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현행과 같음)</p>	<p>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가. (현행과 같음)	
	<p>나.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b>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b>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p>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현행과 같음)	<p>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강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b>시장·군수·구청장</b>등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제47조(반환명령) (현행과 같음)	제47조(반환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u>시장·군수·구청장등이</u> 긴급 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p> <p>제3조(중전의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는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로 본다.</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b>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b>,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중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b>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b></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 수급자가 이 법 시행으로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이 변경된 경우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한시적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p>	<p>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 규정 제8조에 의한 생계급여와 제11조에 의한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p> <p>④ 수급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등(「주거급여법」 제2조제8호의 주택등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급여의 지급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검토안
<p><u>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u></p> <p>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빈곤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u>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u></p> <p>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빈곤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u>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④ <u>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u></p> <p>⑤ <u>이 법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제6조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 30일까지 2014년도, 2015년도의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할 수 있다.</u></p>

개정안(유재중의원안)	수정점토안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제2항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p>	<p>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b>의료급여법</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3조의2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p> <p>② <b>초·중등교육법</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0조의4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p>	

5)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빈곤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빈곤실태조사라 함은 빈곤한 사람을 다

## 나. 종합 의견

-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IMF구제금융 경제위기에서 중산층의 대량 실업과 빈곤 이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국민들 누구든지 국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라는 빈곤선 이하 경우 국가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 이상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구별 욕구에 따라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지급받는 사회권을 실정법으로 당시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시민·사회·종교계를 모두 망라한 기초한 기념비적 입법의 산물임. 현재 제도상의 ALL OR NOTHING의 문제는 제도 예산에 맞춘 부양의무자 기준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각지대 양산, 비합리적인 부양능한 다층적인 부분급여 내지 개별급여를 예산 부족 등 문제로 회피하여 온 역대 정부 할 수 있음.
- 정부의 수정검토안대로 하더라도 비수급 사각지대는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못함.
- 이 법률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국가가 설정한 최저생활기준에 부족한 경제보장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성 보충급여에 관한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들”의 국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청구권을 없애기로 하는 범 국민적 합의가 있다거나 의가 실효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도 발견하기 어려움.

---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최저생계비 계측을 포기한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빈곤한 사람을 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파악할 것인가.의 의

- 그럼에도 유재중 의원안이나 정부의 수정검토안은 전 국민들의 보편적인 사회안전 질적인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의 국민들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국민들의 입법과정에 대한 의견진술권 내지 절차적 참여권을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시 됨.
-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본 법률은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권리성급여 방식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적인 내용 : 폐지 2)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보충급여 : 변경 내지 포기 3) 용 용 확정 : 수급자선정기준과 급여의 기준 모두를 행정기관에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을 사실상 박탈하여 과거 생활보호법제와 같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후퇴하는 결과
- 재정적으로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이 경성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법률안이나 “연성예산”으로 변경되게 되며 그 결과 실질에 있어서 가난한 국민들의 삶을 보장 되어야 할 예산이고, 그 동안에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던 기초생활보장예산이 무상 초연금예산과 같은 힘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경성예산에 밀려서 예산조차 제대로
- 따라서, 개정안이나 수정검토안은 재고되고 현행제도의 수급자들의 실정법상의 구 문화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급여의 실질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